ISSUE PAPER CHECK

WORKERS' COMPENSATION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24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 1,271명 중에서 30.7%인 390명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했다. 뇌심혈관 질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다. 따라서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뇌심혈관 질병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유형이다.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 원칙

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경색이라고 부르며, 터지는 현상을 출혈이라고 부른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등이 뇌심혈관 질병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인정된다면 뇌심혈관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부담요인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에서 질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 즉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뇌심혈관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경우', '단기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산재보험에서 질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뇌심혈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경우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뇌심혈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경우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노동자의 업무가 단기간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근무 형태·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 기간, 그밖에 그 노동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뇌심혈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밖에 그 노동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아래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1.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앞서 살펴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